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3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이훈기 · 허종식 · 최민희  
권향엽 · 노종면 · 이정현  
이인영 · 황운하 · 문금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의 개발·학습·검증·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식별 위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를 “인공지능사회 및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학습·검증·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습용데이터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기준, 재식

별 위험관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u>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u>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u>인공지능사회 및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u>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의2(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학습·검증·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 또는</u></p>

<신 설>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습용데이터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기준, 재식별 위험 관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